|  |  |  |
| --- | --- | --- |
| **선물회사의 선물투자 자문업무**  **시범시행 방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령 제70호  《선물회사의 선물투자 자문업무 시범시행 방법》은 2010년 12월 23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289차 주석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공포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주석: 상복림(尚福林)  2011년 3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선물회사의 선물투자 자문업무 규범화, 서비스능력의 전문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및 선물시장의 국민경제발전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선물거래관리조례》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선물회사의 선물투자 자문업무를 말하며, 고객의 위탁에 따라 아래 열거된 영리성활동에 종사하는 선물회사를 가리킨다.  (1) 고객의 리스크관리제도 건립과 프로세스 오퍼레이팅을 돕고 리스크관리자문 및 특별훈련 등 리스크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2) 선물시장 정보 및 각종 관련 경제정보 수집⬝정리,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가격 및 관련 영향요인 연구분석, 보고 혹은 정보소식의 연구분석서비스 제작 및 제공  (3) 고객의 헤징(hedging), 금리재정 등 투자방안 설계를 위한 선물거래전략 등의 거래자문서비스의 초안 제공  (4)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중국증감회”) 가 규정한 기타 활동.  **제3조** 선물회사는 선물투자 자문업무에 종사하며, 반드시 중국증감회가 허가한 선물투자 자문업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선물투자 자문업무에 종사하는 선물회사의 직원은 반드시 선물투자 자문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규정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물회사와 직원은 선물투자 자문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4조** 선물회사와 그 직원은 선물투자 자문업무에 종사하며 유관법률과 법규, 규정 및 본 방법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신용원칙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객을 공평하게 대하며 이익충돌을 피해야 한다.  **제5조** 중국증감원과 그 출장소는 법률에 의거하여 선물회사와 직원의 선물투자 자문업무 시행에 대한 감독관리를 해야 한다.  중국선물업협회는 선물회사와 직원의 선물투자 자문업무 시행에 대해 자율적인 관리를 한다.  **제2장 회사의 업무자격 및 직원의 종사 자격**  **제6조** 선물회사는 선물투자 자문업무 종사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자본은 인민폐 1억 위안 이상, 순자본은 인민폐 8,000만 위안 이상  (2)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신청일 6개월 이전의 위험감독관리지표 지속  (3) 3년 이상의 선물종사업 경력 및 선물투자자문 종사자격을 갖춘 고급관리직원 1명 이상, 2년 이상의 선물종사업 경력 및 선물투자자문 종사자격을 갖춘 업무인원 5명 이상 있어야 하며, 앞서 기술한 고급관리직원과 업무인원은 최근 3년 내에 신용불량 기록, 행정 ⬝ 형사처벌 기록이 없어야 하고 유권기관의 혐의를 받을만한 위법 사항이 없어야 함  (4) 완벽한 선물투자 자문업무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함  (5) 최근 3년 내 경영상 행정 ⬝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어야 하며 유권기관의 혐의를 받을만한 중대한 위법 사항이 없어야 함  (6) 최근 1년 내 감독관리기구가 채택한《선물거래 관리조례》의 제19조 제2항, 제16조 규정의 감독관리조치 상황이 존재해서는 안됨  (7) 중국증감회는 감독관리원칙에 규정된 기타 조항을 따라야 함.  **제7조** 선물회사는 선물투자 자문업무 자격을 신청할 경우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선물투자 자문업무 자격신청서  (2) 주주총회의 선물투자 자문업무 신청 의결 문건  (3) 신청일 6개월 이전의 선물회사의 위험감독 관리보고서  (4) 부서와 직원관리, 업무활동,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 고객 피드백 및 컴플레인 사항을 포함하는 선물투자 자문업무 관리제도 원본  (5) 규정에 부합하는 최근 2년 간 선물회사의 경영상황 설명  (6) 선물투자 자문업무에 종사하려는 고급관리인원과 업무인원의 명단, 약력, 관련 재직자격과 종사자격증명 및 회사가 발급한 신빙성 있는 증명자료  (7)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기업법인 영업집조》사본, 《선물업무 경영허가증》사본  (8) 증권, 선물관련 업무 자격에 대한 회계사무소의 심계를 거친 2년 이전의 재무보고; 신청일 하반기에 심계를 거친 하반기 재무보고를 제공하여야 함  (9) 선물회사의 본 방법 제 6조 제3,5항에 규정된 조건 부합 여부 및 주주총회 의결의  합법적 여부에 대한 법률사무소의 법률의견서  (10)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8조** 중국증감회는 선물회사 선물투자 자문업무자격 신청 처리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중국선물업협회는 선물투자 자문업무 종사직원의 자격시험, 자격인정, 일상관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 자율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3장 업무규칙**  **제10조** 선물회사와 그 직원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로 고객에게 선물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고객의 기밀사항을 유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선물회사와 그 직원은 선물투자자문서비스 능력을 허위, 과장하여 홍보해서는 안되며 고객을 오도(误导)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선물회사는 반드시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장소, 회사 웹사이트와 중국선물업협회 웹사이트 상에 회사의 업무자격, 직원의 종업자격, 서비스내용, 컴플레인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선물회사가 선물투자 자문업무활동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자기관리능력, 업무수준에 상응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선물투자 자문업무 관리제도를 효율성 있게 집행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검열을 강화하고, 업무의 위험적 요소에 대비해야 한다.  **제13조** 선물회사와 그 직원은 선물투자 자문업무를 진행할 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  서는 안 된다.  (1) 고객에게 이익을 보장하거나, 수익 분배 약정 혹은 위험 공동 부담하는 행위  (2) 허위정보, 불명확한 정보 혹은 내부정보로 고객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선물투자자문활동을 이용하여 선물거래가격을 운영하고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혹은 허위, 오도성(误导性)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4) 개인명의로 서비스 대가를 받는 행위  (5) 선물법규, 규정에 금지된 기타 행위  선물투자 자문업무 직원은 자문서비스를 진행할 때 고객으로부터 대리선물거래를 위탁받을 수 없다.  **제14조** 선물회사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의 신분, 재무현황, 투자경험 등의 상황을 이해하고 고객의 위험선호도 평가, 위험감수능력 및 서비스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서면 및 컴퓨터 저장 형식으로 고객 관련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고객의 선물투자자문의 구체적인 서비스요구에 중점을 두고 선물시장의 위험도를 게시하고 고객에게 선물시장의 위험도에 대한 독립적인 부담을 고지해야 한다.  **제15조** 선물회사는 고객과 선물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해야 하고 약정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준비용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선물투자자문서비스 계약 가이드와 위험 게시서 양식은 중국선물업협회가 제정한다.  **제16조** 선물회사는 리스크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제도 혹은 운영 프로세스를 제정하고, 리스크관리자문 혹은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물의 리스크관리능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선물회사는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서비스 효과와 고객의 피드백을 평가하여 리스크관리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제17조** 선물회사는 연구분석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탁고객을 공평하게 대우 해야 하며 효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분석원의 연구분석의견과 결론을 보증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연구분석보고와 자료정보의 열람, 관리 및 이용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연구분석보고, 자료정보의 이용에 대한 열람과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효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연구분석원 및 회사내부의 직원이 자신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연구보고서와 각종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제18조** 연구분석원은 연구분석보고의 내용과 견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정보의 합법적인 출처, 연구방법의 전문성 및 신중성, 분석 및 결론의 합리성을 보증해야 한다.  연구분석보고는 반드시 적절한 서면 혹은 전자텍스트 형식으로 제작하고 선물회사의 명칭 및 업무자격, 연구분석원의 성명, 종사증 번호, 제작일자 등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정보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연구분석의견의 제한성과 시용자의 위험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제작, 제공한 연구분석보고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선물회사는 거래자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에게 이익상충의 유무를 명시하고, 잠재적인 시장변화와 투자위험을 제시할 뿐 시장시세에 대해 확정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  선물회사가 제공한 투자방안 혹은 선물거래 전략은 본 회사의 연구보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연구보고, 관련업종의 정보 자료 및 공개 공포된 관련 정보 등에 의거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고객의 자발적 선물거래전략결정을 고지해야 하며 고객은 선물거래 결과를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투자전략계획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선물회사는 선물거래소프트웨어, 단말기 장비로 고객에게 자문서비스 혹은 유사한 기능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본 방법을 실행하고, 고객에게 소프트웨어와 단말기장비의 기본 기능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용의 한정성을 알리고, 관련 데이터정보의 출처를 밝히며 거래 소프트웨어, 단말기 장비의 이용 가치 혹은 기능에 대한 허위, 오도성 있는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선물회사는 선물투자 자문업무 운영시행관리에 대해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연한 보관 및 요구에 따라 선물투자 자문업무의 위험게시서, 계약, 리스크관리의견, 연구분석보고, 거래자문건의, 선물거래 소프트웨어 혹은 단말기 장비 설명 등의 업무자료를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제22조** 선물회사는 선물투자 자문업무관리제도의 고객 회답과 컴플레인 규정 중 고객의 회답 및 컴플레인 내용, 요구,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고객의 컴플레인 사항을 즉시, 적절히 처리한다.  **제4장 이익상충 대비**  **제23조** 선물회사는 선물투자 자문업무와 기타 선물업무 간 이익상충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건전한 정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업무장소와 업무장비의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선물투자 자문업무활동 간에 이익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선물회사는 독립된 부서를 구성, 정보격리와 직원회피 등의 업무 분배를 해야 한다.  선물회사의 수석 리스크관리 담당자(CRO)은 이전 규정사항에 대한 실행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4조** 선물호사 및 그 직원과 고객 간에 이익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 권익을 우선하여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고객 간에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하여 처리한다.  **제25조** 선물회사본부는 독립적인 부서를 설립하여 선물투자 자문업무시행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선물회사영업부는 회사본부의 통일적인 관리하에 대외로 선물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선물투자 자문업무원은 회사 명의로 업무활동을 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고객에게 선물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선물투자 자문업무원은 거래, 결산, 위험공제, 재무, 기술 등의 업무직원 및 부서에서 독립되며, 직책이 분리된다.  **제5장 감독관리 및 법률적 책임**  **제28조** 선물회사는 규정의 내용과 양식 요구에 따라 매월 중국증감회 출장소 주소지로 선물자문업무정보를 보고 전달해야 한다.  **제29조** 선물회사의 수석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투자자문업무관리제도의 제정 및 집행 감독 책임을 지고, 선물투자 자문업무의 합법성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법률에 따라 감독개정 및 보고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선물회사의 수석 리스크관리 담당은 중국증감회 출장소에 보고하는 분기별 보고, 연도보고에 본 회사 투자자문업무의 합법성 및 조사 상황을 포함해야 하고, 이익상충발생 방지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제30조** 중국증감회 및 그 출장소는 신중한 감독관리 원칙에 따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선물회사의 투자자문업무 진행 조사를 해야 한다.  **제31조** 선물회사가 규정된 선물투자 자문업무활동 종사 자격을 미 취득하거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개정 명령을 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선물거래관리조례》제7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2조** 선물회사 혹은 그 직원이 선물투자 자문업무 중 아래 명시된 행위를 했을 경우, 중국증감원 및 그 출장소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물거래 관리조례》제59조 규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1) 선물투자 자문서비스 능력을 허위, 거짓, 조작 선전하거나 혹은 고객을 오도(误导)할 경우  (2) 고급관리원의 공석 혹은 업무부서직원이 규정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3) 개인명의로 고객에게 선물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 본 방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규정에 따르지 않은 이익상충 대비 관리제도 및 메커니즘  (6) 비효율적인 이익상충 관리제도 및 메커니즘의 적합하지 못한 처리, 중대한 이익상충의 발생을 야기하는 경우  (7) 연구보고,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본인 및 기타 이익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8) 본 방법에 규정된 기타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선물회사 혹은 그 직원이 상기 내용에 해당하고, 경위가 엄중할 경우《선물거래관리조례》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혐의가 있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제6장 부 칙**  **제33조** 선물회사는 선물중개업무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자문, 트레이닝 등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물법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4조** 선물회사와 그 직원은 간행물, TV, 라디오와 인터넷 등 공공매체를 통해 선물시세분석 등 정보를 전달하고 반드시 선물투자 자문업무 및 종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금융정보전달 관련 규정 및 타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물정보 전달 진행을 하기 전, 선물회사와 그 직원은 중국증감회 출장소의 비안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증권경영기구에 종사하는 선물투자 자문업무의 자격조건 및 감독관리요구 등의 사항은 중국증감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36조** 본 방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期货公司期货投资咨询业务**  **试行办法**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令第70号  《期货公司期货投资咨询业务试行办法》已经2010年12月23日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第289次主席办公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5月1日起施行。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主席：尚福林  　 二○一一年三月二十三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期货公司期货投资咨询业务活动，提高期货公司专业化服务能力，保护客户合法权益，促进期货市场更好地服务国民经济发展，根据《期货交易管理条例》等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期货公司期货投资咨询业务，是指期货公司基于客户委托从事的下列营利性活动：  （一）协助客户建立风险管理制度、操作流程，提供风险管理咨询、专项培训等风险管理顾问服务；  （二）收集整理期货市场信息及各类相关经济信息，研究分析期货市场及相关现货市场的价格及其相关影响因素，制作、提供研究分析报告或者资讯信息的研究分析服务；  （三）为客户设计套期保值、套利等投资方案，拟定期货交易策略等交易咨询服务；  （四）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中国证监会）规定的其他活动。  **第三条** 期货公司从事期货投资咨询业务，应当经中国证监会批准取得期货投资咨询业务资格；期货公司从事期货投资咨询业务的人员应当取得期货投资咨询业务从业资格。  未取得规定资格的期货公司及其从业人员不得从事期货投资咨询业务活动。  **第四条** 期货公司及其从业人员从事期货投资咨询业务，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规章和本办法规定，遵循诚实信用原则，基于独立、客观的立场，公平对待客户，避免利益冲突。  **第五条** 中国证监会及其派出机构依法对期货公司及其从业人员从事期货投资咨询业务实行监督管理。  中国期货业协会对期货公司及其从业人员从事期货投资咨询业务实行自律管理。  **第二章 公司业务资格和人员从业资格**  **第六条** 期货公司申请从事期货投资咨询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一）注册资本不低于人民币1亿元，且净资本不低于人民币8000万元；  （二）申请日前6个月的风险监管指标持续符合监管要求；  （三）具有3年以上期货从业经历并取得期货投资咨询从业资格的高级管理人员不少于1名，具有2年以上期货从业经历并取得期货投资咨询从业资格的业务人员不少于5名，且前述高级管理人员和业务人员最近3年内无不良诚信记录，未受到行政、刑事处罚，且不存在因涉嫌违法违规正被有权机关调查的情形；  （四）具有完备的期货投资咨询业务管理制度；  （五）近3年内未因违法违规经营受到行政、刑事处罚，且不存在因涉嫌重大违法违规正被有权机关调查的情形；  （六）近1年内不存在被监管机构采取《期货交易管理条例》第五十九条第二款、第六十条规定的监管措施的情形；  （七）中国证监会根据审慎监管原则规定的其他条件。  **第七条** 期货公司申请期货投资咨询业务资格，应当提交下列申请材料：  （一）期货投资咨询业务资格申请书；  （二）股东会关于申请期货投资咨询业务的决议文件；  （三）申请日前6个月的期货公司风险监管报表；  （四）期货投资咨询业务管理制度文本，内容包括部门和人员管理、业务操作、合规检查、客户回访与投诉等；  （五）最近3年的期货公司合规经营情况说明；  （六）拟从事期货投资咨询业务的高级管理人员和业务人员的名单、简历、相关任职资格和从业资格证明，以及公司出具的诚信合规证明材料；  （七）加盖公司公章的《企业法人营业执照》复印件、《经营期货业务许可证》复印件；  （八）经具有证券、期货相关业务资格的会计师事务所审计的前一年度财务报告；申请日在下半年的，还应当提供经审计的半年度财务报告；  （九）律师事务所就期货公司是否符合本办法第六条第（三）、（五）项规定的条件，以及股东会决议是否合法出具的法律意见书；  （十）中国证监会规定的其他材料。  **第八条** 中国证监会自受理期货公司期货投资咨询业务资格申请之日起2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  **第九条** 中国期货业协会负责期货投资咨询业务从业人员的资格考试、资格认定、日常管理等相关工作，相关自律管理办法由中国期货业协会制定。  **第三章 业务规则**  **第十条** 期货公司及其从业人员应当以专业的技能，谨慎、勤勉、尽责地为客户提供期货投资咨询服务，保守客户的商业秘密，维护客户合法权益。  期货公司及其从业人员不得对期货投资咨询服务能力进行虚假、误导性的宣传，不得欺诈或者误导客户。  **第十一条** 期货公司应当按照信息公示有关规定，在营业场所、公司网站和中国期货业协会网站上公示公司的业务资格、人员的从业资格、服务内容、投诉方式等相关信息。  **第十二条** 期货公司开展期货投资咨询业务活动，应当遵循具体的业务操作规范，并应与自身的管理能力、业务水平和人员配置相适应，有效执行期货投资咨询业务管理制度，加强合规检查，防范业务风险。  **第十三条** 期货公司及其从业人员在开展期货投资咨询服务时，不得从事下列行为：  （一）向客户做获利保证，或者约定分享收益或共担风险；  （二）以虚假信息、市场传言或者内幕信息为依据向客户提供期货投资咨询服务；  （三）利用期货投资咨询活动操纵期货交易价格、进行内幕交易，或者传播虚假、误导性信息；  （四）以个人名义收取服务报酬；  （五）期货法规、规章禁止的其他行为。  期货投资咨询业务人员在开展期货投资咨询服务时，不得接受客户委托代为从事期货交易。  **第十四条** 期货公司应当事前了解客户的身份、财务状况、投资经验等情况，认真评估客户的风险偏好、风险承受能力和服务需求，并以书面和电子形式保存客户相关信息。  期货公司应当针对客户期货投资咨询具体服务需求，揭示期货市场风险，明确告知客户独立承担期货市场风险。  **第十五条** 期货公司应当与客户签订期货投资咨询服务合同，明确约定服务的具体内容和费用标准等相关事项。  期货投资咨询服务合同指引和风险揭示书格式，由中国期货业协会制定。  **第十六条** 期货公司提供风险管理服务时，应当发挥自身专业优势，为客户制定符合其需要的风险管理制度或者操作流程，提供有针对性的风险管理咨询或者培训，不得夸大期货的风险管理功能。  期货公司应当定期评估风险管理服务效果和客户反馈意见，不断改进风险管理服务能力。  **第十七条** 期货公司提供研究分析服务时，应当公平对待委托客户，并采取有效措施，保证研究分析人员独立形成研究分析意见和结论。  期货公司应当建立研究分析报告和资讯信息的审阅、管理及使用机制，对研究分析报告、资讯信息的使用进行审阅和合规检查。  期货公司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研究分析人员以及公司内部其他人员利用研究报告、资讯信息为自身及其他利益相关方谋取不当利益。  **第十八条** 研究分析人员应当对研究分析报告的内容和观点负责，保证信息来源合法合规，研究方法专业审慎，分析结论合理。  研究分析报告应当制作形成适当的书面或者电子文本形式，载明期货公司名称及其业务资格、研究分析人员姓名、从业证号、制作日期等内容，同时注明相关信息资料的来源、研究分析意见的局限性与使用者风险提示。  期货公司制作、提供的研究分析报告不得侵犯他人的知识产权。  **第十九条** 期货公司提供交易咨询服务时，应当向客户明示有无利益冲突，提示潜在的市场变化和投资风险，不得就市场行情做出确定性判断。  期货公司提供的投资方案或者期货交易策略应当以本公司的研究报告、合法取得的研究报告、相关行业信息资料以及公开发布的相关信息等为主要依据。  期货公司应当告知客户自主做出期货交易决策，独立承担期货交易后果，并不得泄露客户的投资决策计划信息。  **第二十条** 期货公司以期货交易软件、终端设备为载体，向客户提供交易咨询服务或者具有类似功能服务的，应当执行本办法，并向客户说明交易软件、终端设备的基本功能，揭示使用局限性，说明相关数据信息来源，不得对交易软件、终端设备的使用价值或功能作出虚假、误导性宣传。  **第二十一条** 期货公司应当对期货投资咨询业务操作实行留痕管理，并按照中国证监会规定的保存年限和要求，妥善保存期货投资咨询业务的风险揭示书、合同、风险管理意见、研究分析报告、交易咨询建议、期货交易软件或者终端设备说明等业务材料。  **第二十二条** 期货公司应当有效执行期货投资咨询业务管理制度中的客户回访与投诉规定，明确客户回访与投诉的内容、要求、程序，及时、妥善处理客户投诉事项。  **第四章 防范利益冲突**  **第二十三条** 期货公司应当制定防范期货投资咨询业务与其他期货业务之间利益冲突的管理制度，建立健全信息隔离机制，并保持办公场所和办公设备相对独立。  期货投资咨询业务活动之间可能发生利益冲突的，期货公司应当作出必要的岗位独立、信息隔离和人员回避等工作安排。  期货公司首席风险官应当对前款规定事项进行检查落实。  **第二十四条** 期货公司及其从业人员与客户之间可能发生利益冲突的，应当遵循客户利益优先的原则予以处理；不同客户之间存在利益冲突的，应当遵循公平对待的原则予以处理。  **第二十五条** 期货公司总部应当设立独立的部门，对期货投资咨询业务实行统一管理。  期货公司营业部应当在公司总部的统一管理下对外提供期货投资咨询服务。  **第二十六条** 期货投资咨询业务人员应当以期货公司名义开展期货投资咨询业务活动，不得以个人名义为客户提供期货投资咨询服务。  **第二十七条** 期货投资咨询业务人员应当与交易、结算、风险控制、财务、技术等业务人员岗位独立，职责分离。  **第五章 监督管理和法律责任**  **第二十八条** 期货公司应当按照规定的内容与格式要求，每月向住所地中国证监会派出机构报送期货投资咨询业务信息。  **第二十九条** 期货公司首席风险官负责监督期货投资咨询业务管理制度的制定和执行，对期货投资咨询业务的合规性定期检查，并依法履行督促整改和报告职责。  期货公司首席风险官向住所地中国证监会派出机构报送的季度报告、年度报告中，应当包括本公司期货投资咨询业务的合规性及其检查情况，并重点就防范利益冲突作出说明。  **第三十条** 中国证监会及其派出机构按照审慎监管原则，定期或者不定期对期货公司期货投资咨询业务进行检查。  **第三十一条** 期货公司未取得规定资格从事期货投资咨询业务活动的，或者任用不具备相应资格的人员从事期货投资咨询业务活动的，责令改正；情节严重的，根据《期货交易管理条例》第七十条的规定处罚。  **第三十二条** 期货公司或其从业人员开展期货投资咨询业务出现下列情形之一的，中国证监会及其派出机构可以针对具体情况，根据《期货交易管理条例》第五十九条的规定采取相应监管措施：  （一）对期货投资咨询服务能力进行虚假、误导性宣传，欺诈或者误导客户；  （二）高级管理人员缺位或者业务部门人员低于规定要求；  （三）以个人名义为客户提供期货投资咨询服务；  （四）违反本办法第十三条规定；  （五）未按照规定建立防范利益冲突的管理制度、机制；  （六）未有效执行防范利益冲突管理制度、机制且处置失当，导致发生重大利益冲突事件；  （七）利用研究报告、资讯信息为自身及其他利益相关方谋取不当利益；  （八）其他不符合本办法规定的情形。  期货公司或其从业人员出现前款所列情形之一，情节严重的，根据《期货交易管理条例》第七十条、第七十一条、第七十三条、第七十四条相关规定处罚；涉嫌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  **第六章 附 则**  **第三十三条** 期货公司基于期货经纪业务向客户提供咨询、培训等附属服务的，应当遵守期货法规、规章的相关规定。  **第三十四条** 期货公司及其从业人员通过报刊、电视、电台和网络等公共媒体开展期货行情分析等信息传播活动的，应当取得期货投资咨询业务资格及从业资格，遵守金融信息传播相关规定，保护他人的知识产权；在开展期货信息传播活动前，期货公司及其从业人员应当向住所地的中国证监会派出机构备案。  **第三十五条** 证券经营机构从事期货投资咨询业务活动的资格条件和监管要求等由中国证监会另行规定。  **第三十六条** 本办法自2011年5月1日起施行。 |